ESG

Sustainable Investing Analyst 이경연
kyungyeon.lee@daishin.com

[2026 주주총회 프리뷰] 정책 효능감

- 주주총회를 앞두고 상장기업의 「주식 소각 결정」 공시 증가
- 주주총회 안건에서도 상법 개정 관련 정관 변경 다수 상정
- 구속력 있는 정책 효능감 → 韓 증시 인프라의 구조적 업그레이드에 기여

주주총회를 앞두고 상장기업의 「주식 소각 결정」 공시 증가

2026 년 2 월 유가증권시장 주식 소각 공시는 48 건으로 1 월(10 건) 대비 4.8 배 급증했다. 3 월 13 일 기준 소각 예정금액은 28.3 조원으로 전년 연간(30 조원)의 94.6%에 달한다. 3 차 상법 개정을 전후한 기업들의 선제적·즉각적 대응으로, 구속력 있는 정책의 신호 효과(Signaling effect)가 작동하고 있다.

주주총회 안건에서도 상법 개정 관련 정관 변경 다수 상정

코스피 200 기업의 「주주총회 소집 공고」 분석 결과, 상법 개정 항목이 압도적 수용률을 보였다. SK, 두산, 한화 등 주요 지주회사는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을 별도 안건으로 상정하여 자사주 처리 방향을 이사회(회사)가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의 동의를 얻는 거버넌스 취지에 부합하는 대응을 보였다.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밸류업에 이어 구속력 있는 정책의 효능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고배당기업은 주주총회 익일까지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가 사실상 의무화되었다. 이에 따라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따른 유동주식 기준 시가총액 제공이 가능한 시장 인프라, 밸류업 공시 참여 확대, 두 변화가 맞물리게 되었다. 이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논의에서 한국 증시의 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코스피 200 기업들의 상법 개정 관련 정관 변경 안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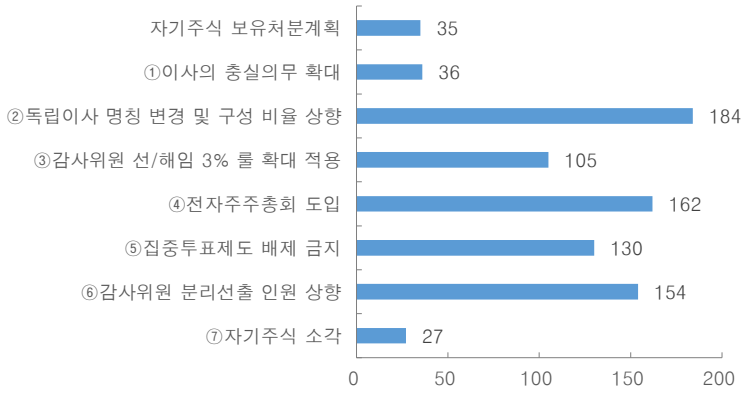

자료: DART,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2026 년 주주총회가 특별한 이유

2026년 주주총회는 단순한 연례 행사가 아니다. 2024년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 2026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배당소득 과세특례 도입, 그리고 1·2·3차 상법 개정이라는 굵직한 제도 변화들이 쌓인 결과가 처음으로 기업들의 주주총회를 통해 드러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코스피 200 상장기업 195개사의 주주총회 부의안건을 분석한 결과(2026년 3월 13일 기준), 예상을 상회하는 두 가지 변화가 포착되었다: ①주식 소각 결정 공시 급증과 ②상법 개정 내용의 정관 반영 안건 증가. 이는 자발적 참여 유도 방식이었던 밸류업 프로그램과 달리, 구속력 있는 법 개정이 기업 행동을 바꾸는데 더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작동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①주식 소각 공시 급증

3차 상법 개정안이 2026년 2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3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및 공포되기에 앞서 기업들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 주식 소각 결정 공시 추이는 이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지표다.

2026년 2월 한 달간 유가증권시장 주식 소각 공시가 48건으로 1월(10건) 대비 4.8배 급증했다. 3차 상법 개정 통과(2월 25일)를 전후한 기업들의 선제적·즉각적 대응이다. 법 시행 이전에 이미 이 같은 속도로 반응이 나타난다는 점은 구속력 있는 정책의 신호 효과(Signaling effect)가 작동했음을 의미한다.

그림 1. 연간 주식 소각 결정 공시 건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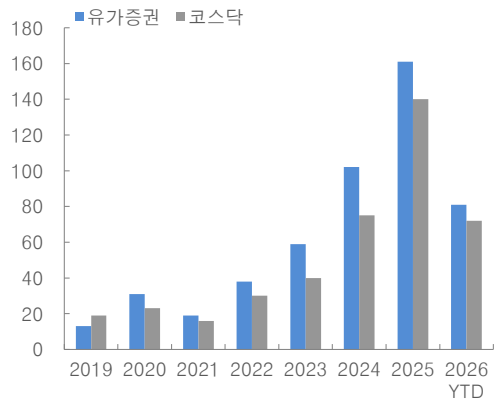

자료: DART,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2. 2026 년 월별 주식 소각 공시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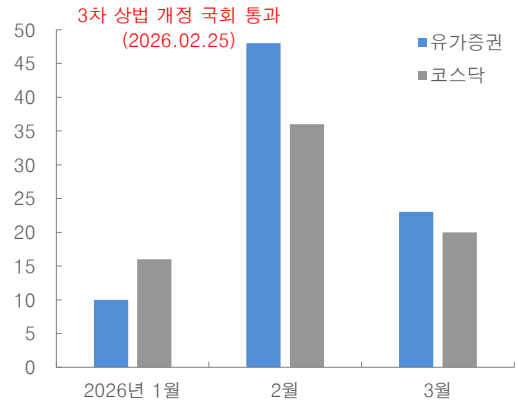

자료: DART,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3. 유가증권 시장 주식 소각 금액

자료: DART,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②주주총회 정관 변경 안건 현황

코스피 200 상장기업 195개사(3월 13일 공시 기준)의 주주총회 부의안건을 분석한 결과, 1·2·3차 상법 개정 관련 정관 변경 안건이 다수 상정되었다. 이 중 '자기주식 소각'은 두 가지 형태로 상정되었다. 첫째는 정관 변경 안건이다. 3차 상법 개정을 반영하여, 회사가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자기주식을 보유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정관에 신설하는 내용이다. 통상적으로 "회사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전략적 제휴, 사업구조의 개편, 인수합병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와 같은 조항을 신설하는 방식이다.

둘째는 별도 개별 안건인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 승인의 건'이다. 이 안건은 정관 변경과는 별개로,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의 처리 방향을 주주총회에서 직접 결의하는 방식이다. 임직원 보상 재원으로 활용할 수량, 소각할 수량 등 자기주식의 종류·수량·처분 목적을 상세하게 보고하고 승인받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SK, 두산, 한화 등 대표 지주회사들이 이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자사주 처리 방향을 이사회(회사)가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총회에서 결의함으로써,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주와 소통하는 기업 거버넌스의 취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표 1. 구속력 있는 상법 개정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법률 조항	시행 시기
1차 상법 개정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제 382 조의 3	2025.07.22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독립이사 비율 상향	제 542 조의 8	2026.07.23
	감사위원 선·해임 3%룰 적용	제 542 조의 12	2026.07.23
	전자주주총회 도입	제 542 조의 12	2027.01.01
2차 상법 개정	집중투표제 배제 금지	제 542 조의 7	2026.09.10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제 542 조의 7	2026.09.10
3차 상법 개정	자기주식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소각 의무	제 341 조의 4	2026.03.06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4. 상법 개정 관련 정관 변경 안건 상정 기업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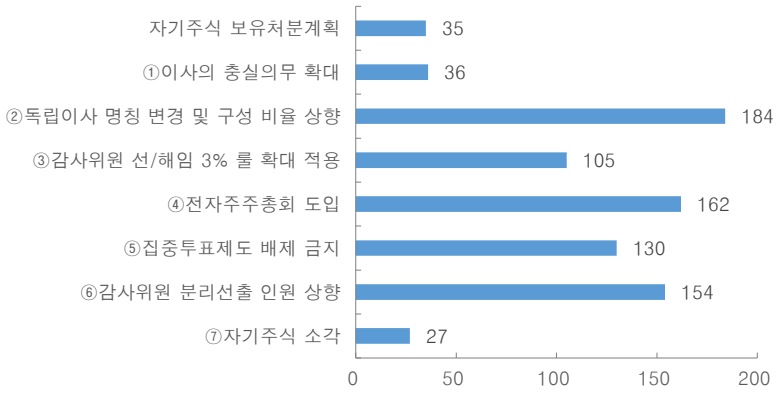

자료: DART,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5. CJ의 3차 상법 개정을 반영한 정관 변경 안건

제2-6호 : 자기주식 보유 또는 처분에 관한 규정 신설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신설)	**제9조의5 (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 회사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상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	자기주식 보유 또는 처분에 관한 규정 신설 (상법 제341조의4)

자료: DART,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표 2. '자기주식 소각' 관련 정관 변경 안건을 상정한 기업

	티커	기업명	시가총액(십억원)	전체 발행주식 수	보통주 자기주식 수	자기주식 비중(%)
1	A000660	SK 하이닉스	648,559	712,702,365	21,791,280	3.1
2	A068270	셀트리온	47,480	231,048,261	12,359,972	5.3
3	A006800	미래에셋증권	39,412	691,816,408	131,846,251	19.1
4	A096770	SK 이노베이션	19,035	170,301,214	3,404,649	2.0
5	A033780	KT&G	17,546	114,676,645	10,866,189	9.5
6	A352820	하이브	15,569	43,067,846	106,337	0.2
7	A030200	KT	15,020	252,021,685	10,925,239	4.3
8	A259960	크래프톤	11,590	47,404,591	3,234,372	6.8
9	A029780	삼성카드	6,847	115,858,891	9,148,196	7.9
10	A001040	CJ	5,147	35,663,733	2,118,543	5.9
11	A036570	엔씨소프트	4,923	21,544,022	2,151,205	10.0
12	A251270	넷마블	4,491	81,960,371	25,800	0.0
13	A062040	산일전기	4,295	30,545,200	60,753	0.2
14	A018880	한온시스템	4,161	1,026,262,552	11,210	0.0
15	A004990	롯데지주	3,158	105,714,840	28,858,476	27.3
16	A014680	한솔케미칼	3,127	11,370,195	467,296	4.1
17	A011780	금호석유화학	3,027	29,055,228	3,498,834	12.0
18	A009420	한올바이오파마	2,941	52,240,638	1,448,447	2.8
19	A023530	롯데쇼핑	2,716	28,288,755	18,115	0.1
20	A000120	CJ 대한통운	2,553	22,812,344	2,867,215	12.6
21	A030000	제일기획	2,381	115,041,225	13,762,500	12.0
22	A069620	대웅제약	1,937	11,586,575	80,305	0.7
23	A361610	SK 아이이테크놀로지	1,795	81,787,100	–	–
24	A006280	녹십자	1,779	11,686,538	273,360	2.3
25	A003090	대웅	1,384	58,141,980	17,251,270	29.7
26	A003240	태광산업	1,238	1,113,400	271,769	24.4
27	A069260	TKG 휴켐스	769	40,878,588	2,507,711	6.1

자료: DART, Quantiwis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표 3. 주요 지주회사들의 2026 년 주주총회 부의 안건

티커	기업명	안건 내용	주주총회일
A034730	SK	제 1 호 의안 : 제 35 기 (2025.1.1.~2025.12.31.) 재무제표 승인 제 2 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 · 제 2-1 호 : 집중투표제 관련 정관 일부 변경 · 제 2-2 호 : 이사회 관련 정관 일부 변경 · 제 2-3 호 :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 등 기타 정관 정비 관련 정관 일부 변경 제 3 호 의안 :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 인 선임 (후보 : 이계정) 제 4 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 승인 (160 억 원) **제 5 호 의안 :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 승인**	3 월 26 일
A267250	HD 현대	제 1 호 의안 : 제 9 기(2025 년 1 월 1 일 ~ 2025 년 12 월 31 일)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 2 호 의안 : 집중투표제가 배제된 정관 변경의 건 제 3 호 의안 : 그 외의 정관 변경의 건 제 4 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조영철) 제 5 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사외이사 장경준) 제 6 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3 월 31 일
A00150	두산	제 1 호 의안 : 제 89 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 2 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 2-1 호 의안 : 전자주주총회 도입의 건 · 제 2-2 호 의안 :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의 건 · 제 2-3 호 의안 : 독립이사 제도 도입 및 감사위원 분리선임 인원 상향의 건 · 제 2-4 호 의안 : 서면투표 폐지 및 전자투표 의무 시행의 건 · 제 2-5 호 의안 : 분기배당 기준일 설정 변경의 건 제 3 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후보 : 김혜성) 제 4 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 5 호 의안 : 자기주식 보유, 처분 계획 승인의 건**	3 월 31 일
A003550	LG	제 1 호 의안 : 제 64 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주당 예정 배당금:보통주 2,100 원/우선주 2,150 원) ※ 2025 년 중간 배당 포함시 보통주 3,100 원 / 우선주 3,150 원 제 2 호 의안 : 정관 변경 승인의 건 · 제 2-1 호 의안 :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 · 제 2-2 호 의안 :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 · 제 2-3 호 의안 : 독립이사로 명칭 변경 · 제 2-4 호 의안 : 감사위원 선 · 해임시 의결권 제한 강화 · 제 2-5 호 의안 :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상향 · 제 2-6 호 의안 : 부칙 제 3 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사외이사 김환수) 제 4 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 선임의 건 (사외이사 박종수) 제 5 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사외이사 김환수) 제 6 호 의안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3 월 26 일
A000880	한화	제 1 호 의안: 제 74 기(2025.01.01.~2025.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안) 포함], 연결재무제표, 영업보고서 승인 및 이익배당의 건 **제 2 호 의안: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 승인의 건** 제 3 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①제 3-1 호 의안: 사외이사 명칭 변경 ②제 3-2 호 의안: 감사위원 선.해임 의결권 제한 강화 ③제 3-3 호 의안: 감사위원 분리 선임 인원 확대 ④제 3-4 호 의안: 집중투표 배제 금지 ⑤제 3-5 호 의안: 전자주주총회 도입 ⑥제 3-6 호 의안: 이사 임기 변경 ⑦제 3-7 호 의안: 시행시기에 따른 부칙사항 반영 제 4 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①제 4-1 호 의안: 사내이사 선임의 건 (후보: 김동관) ②제 4-2 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 (후보: 변혜령) ③제 4-3 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 (후보: 조훈희) 제 5 호 의안: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후보: 조훈희) 제 6 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후보: 권익환) 제 7 호 의안: 이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3 월 26 일

A001040	CJ	제 1 호 의안 : 제 73 기(2025.1.1~2025.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 2 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 제 2-1 호 : 독립이사 명칭 변경 · 제 2-2 호 : 집중투표 배제 조항 삭제 · 제 2-3 호 :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 · 제 2-4 호 : 감사위원 선 · 해임 시 의결권 제한 강화 · 제 2-5 호 :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확대 · 제 2-6 호 : 자기주식 보유 또는 처분에 관한 규정 신설 · 제 2-7 호 : 부칙 제 3 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후보자 김재신) 제 4 호 의안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의 건	3 월 26 일
A004800	효성	제 1 호 의안 : 제 71 기 (2025.1.1 ~ 2025.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 현금배당안 : 1 주당 5,000 원 제 2 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 2-1 호 의안: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의 건 · 제 2-2 호 의안: 그 외 정관 변경의 건 제 3 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제 3-1 호 의안 : 사내이사 조현준 선임의 건(임기 2 년) · 제 3-2 호 의안 : 사외이사 유일호 선임의 건 ※제 2-2 호 의안 부결될 경우 임기는 취임 후 2 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로 함 ※ 제 2-2 호 의안 가결될 경우 제 3-2 호 의안 자동폐기 제 4 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유일호 선임의 건(임기 3 년) ※ 제 2-2 호 의안 부결될 경우 제 4 호 의안 자동폐기 제 5 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유일호 선임의 건 ※ 제 2-2 호 의안 가결될 경우 제 5 호 의안 자동폐기 제 6 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3 월 20 일

자료: DART,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정책 효능감의 구조적 함의

현재 한국 증시에서 시가총액은 발행주식총수에 주가를 곱해 산출되며,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는 차감되지 않는다. 그러나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되어 시장에 자사주가 사실상 사라지게 되면, 자사주를 차감한 유동주식 기준 시가총액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한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 실제 유통되는 주식, 즉 자사주를 차감한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정보를 습득하고 이해한다. 한국 증시도 이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정보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밸류업 프로그램은 자발적 참여를 촉구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구속력 있는 상법 개정과 성격이 다르다. 그러나 2025년 1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가 도입되면서, 밸류업 공시에도 실질적 강제력이 생겼다. 배당소득 과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고배당기업은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결의한 다음 날까지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를 제출해야 한다.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밸류업 공시가 사실상 의무화된 것이다.

이는 밸류업 공시가 단순한 자율공시에서 세제 혜택과 직접 연결된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격상되었음을 의미한다. 상법 개정이 가져온 구속력과 동일한 매커니즘은 아니지만, 세제 혜택이라는 실질적 인센티브를 통해 고배당 기업들의 밸류업 공시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따른 시장 인프라 개선과 밸류업 공시 참여 확대, 두 가지 변화가 맞물리면서 한국 증시의 구조적 업그레이드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그림 6. **배당소득 과세특례 충족 고배당 기업은 주주총회 익일까지 밸류업 공시 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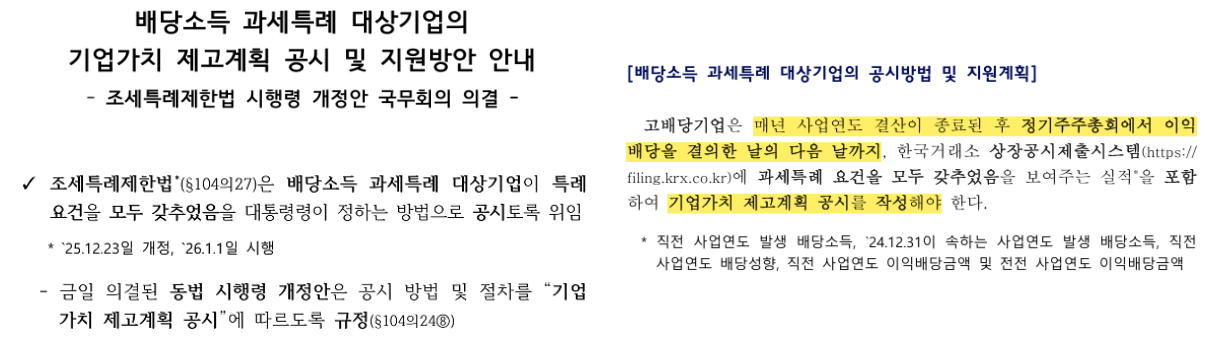

배당소득 과세특례 대상기업의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및 지원방안 안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조세특례제한법***(§104의27)은 **배당소득 과세특례 대상기업**이 **특례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공시**토록 위임

* `25.12.23일 개정, `26.1.1일 시행

- 금일 의결된 **동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시 방법 및 절차를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에 따르도록 **규정**(§104의24⑧)

[배당소득 과세특례 대상기업의 공시방법 및 지원계획]

고배당기업은 매년 사업연도 결산이 종료된 후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결의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제출시스템**(https://filing.krx.co.kr)에 **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보여주는 실적*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를 **작성**해야 한다.

* 직전 사업연도 발생 배당소득, `24.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 발생 배당소득, 직전 사업연도 배당성향, 직전 사업연도 이익배당금액 및 전전 사업연도 이익배당금액

자료: 금융위원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pliance Notice]

금융투자업규정 4-20조 1항5호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담당자: 이경연)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